

함양군 농촌마을유류자원조사 사업 위·수탁 협약서

2024. 04.



함양군 농촌마을유류자원조사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라 빈집 실태 파악을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양군 실태조사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자 함양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 한국부동산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업” 이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2 및 이 협약에 따라 위탁자가 위탁하고 수탁자가 수행하는 빈집실태조사를 말한다.
- “빈집” 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사업비”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빈집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사업은 법에서 정하는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함양군 관내 240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총 사업비 : 금일천구백이십만원 [₩ 19,200,000, 부가세포함]

<사업비 산출내역> 80,000원 × 240호 = 19,200,000원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협약서에 각각 날인한 날부터 7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단축·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범위) 이 협약과 관련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의 업무

- 가.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부담
- 나.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다. 상기 각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2. 수탁자의 업무

- 가.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 운영 및 관리
- 나. 사업의 관리 · 감독 및 관련 제반사항 운영
- 다. 결과보고 및 자료제공 협조
- 라. 상기 각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7조(사업비 청구 및 지급)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사업비를 위 · 수탁 협약서 체결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은 표본 당 단가계약이며 완료 시 정산내역서는 완료계와 성과품 제출로 대체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업비를 사후정산하고, 그 내역을 상호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8조(성실의무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 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거한 사업성과 관련 정보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협약의 해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 수탁자가 업무수행 중 위탁자와 사전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과업 공정기간이 현저하게 늦어지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협의사항) ①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위탁자와 협의 후 수탁자 주관하에 수탁자의 자회사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시(도)의 해석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와 관할 시(도)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따른다.

제11조(자료제공 등) 수탁자는 본 업무 수행 중 취득 또는 작성한 자료 등에 대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협약서 작성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 (효력발생) 본 협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직인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4월 8일

“위탁자” 경상남도 함양군수



“수탁자” 한국부동산원 원장

